

수원지방법원 2024. 6. 5 선고 2023가단605236 판결 [토지매매대금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(담당변호사 주규환)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6. 5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2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2. 1.부터 2024. 1. 24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‘청구원인’ 기재와 같은바, 갑 1 내지 4호증(가지번호 포함)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그렇다면,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2. 1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4. 1. 24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
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곽동우

청 구 원 인

1. 당사자 지위

피고는 소외 망 C(이하 '망 C'이라 합니다) 소유의 양주시 D, E, F, G, H 토지 등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합니다,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부동산등기부등본)을 매수한 소외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자이고, 망 C은 망 J과 혼인하여 자녀로 소외 K, 원고 A, 소외 L를 두었고, 2021. 6. 2. 사망하였습니다(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, 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).

2. 토지매매대금청구권

가. 망 C은 2018. 8. 28. 소외 I과 사이에 망 C 소유의 경기 양주시 D, E, F, H 토지 등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합니다)에 대하여 매매대금 13억 3천만원으로 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습니다.

나. 피고는 2019. 5. 30.경 I이 망 C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잔금 6억 원에 대하여 망 C에게 2019. 11. 30.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토지매매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고(갑 제4호증 토지매매이행각서),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I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다음, 2019. 6. 28. I으로부터 공유자 M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바 있습니다(갑 제1호증의 1 내지 5 부동산등기부등본).

다. 그 후 피고는 2022. 4. 29. 이 사건 토지를 소외 N에게 매매하고,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바 있습니다(갑 제1호증의 1 내지 5 부동산등기부등본).

라. 그런데 피고는 망 C에게 위 토지매매이행각서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6억원에 대하여 지급한 바 없습니다.

마. 따라서 망 C은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매매이행각서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6억 원에 대하여 매매대금청구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.

3. 원고의 상속분 가액

원고의 상속분은 상속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재산가액에 원고의 비율을 곱한 것으로써 이는 각자 상속분의 1/3(상속인이 3명이므로 원고의 상속분은 1/3)에 해당하고, 위 토지매매이행각서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이 금 6억원이므로, 금 6억 원에 대한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 2억원 상당(상속인이 3명이므로 원고의 상속분은 금 6억원의 1/3)의 금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.

4. 결론

위와 같은 사정으로, 원고는 피고에게 부득이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 지급받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.

